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 12. 15.(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 기금
- 다. 제출안건 : 2023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11. 3.(목)
- 나. 제출자 : 인천광역시장
- 다. 회부일자 : 2022. 11. 4.(금)
- 라. 상정일자 : 2022. 12. 13.(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12. 14.(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 12. 15.(목)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천 준 호
 -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임 조 순
 - 질의 및 답변
 - 심사결과 : 수정가결

1. 기금 설치목적

-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지만,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기금 설치현황

【기금 설치현황】

회 계 명	설치목적	설치근거	
		법령	자치법규
남 북 교 류 기 금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	—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0조
통 합 관 리 기 금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 방 상 환 기 채 금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 기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원리금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 및 관리·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 역 개 발 기 금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 난 관 리 기 금	재난과 재해의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 해 구 호 기 금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응급적인 구호사업 지원	재해구호법 제14조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시장진흥 및 시장의 현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농 어 종 흥 기 촌 금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 증대 사업 지원 등 농어촌의 발전 도모	—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 회 복 지 기 금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 추진	—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화장시설 주변지역주지원기금 운용을 통한 지역주민 복지혜택 및 삶의 질 향상 추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양 성 평 등 기 금	양성평등실현 촉진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7조
식 품 진 흥 기 금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수준 향상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악 취 관 리 기 금	남동구 및 서북부 지역 사업장 악취 효과적 관리, 시민건강 보호 및 체감환경 개선	—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너 지 사 업 기 금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등	—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분 뇨 처 리 시 설 주변지역지원기금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생활 환경 보전 및 주민환경개선	—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도 시 및 주 거 환 경 정 비 기 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8조

3. 기금 총괄

- 2023년 기금조성규모를 살펴보면, 총 16개 기금을 운용할 예정이며,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총 2조 906억 원이며, 2023년 수입계획은 5,536억 원, 지출계획은 3,833억 원으로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총 2조 2,610억 원으로 나타나, 2022년 기금조성규모 상 수입계획 7,173억 원, 지출계획 4,113억 원과 비교하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각각 △1,637억 원, △280억 원 감소하였음.

【기금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A+B)	비고
	수 입	지 출	증감(B)		
2,090,623 (1,285,088)	553,646 (375,008)	383,302 (347,540)	170,344 (27,468)	2,260,968 (1,312,556)	

※ () : 통합관리기금 제외 합계

* 자료 :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발채

- 2022년도말 및 2023년도말 기금별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이 9,471억 원 및 9,985억 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이 8,055억 원 및 9,484억 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801억 원 및 689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522억 원 및 565억 원으로 나타남.
- 각 기금별 수입계획 규모순으로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1,857억 원, 통합관리기금 1,786억 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387억 원 순이며, 지출계획 규모순으로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1,343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54억 원, 지방채상환기금 522억 원 순으로 나타남.

【기금별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기금명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d=a+b-c)	증감률
		수입(b)	지출(c)	증감(d)		
계	2,090,623	553,646	383,302	170,344	2,260,968	8.1
남북교류협력기금	7,836	176	1,724	△1,548	6,288	△19.7
통합관리기금	805,535	178,638	35,762	142,876	948,411	17.7
지방채상환기금	7,132	46,221	52,184	△5,963	1,169	△83.6
지역개발기금	947,058	185,736	134,259	51,477	998,535	5.4
재난관리기금	80,106	38,448	49,613	△11,165	68,941	△13.9
재해구호기금	42,203	19,211	3,800	15,411	57,164	35
중소기업육성기금	46,526	37,691	55,364	△17,673	28,853	△37.9
농어촌진흥기금	10,791	577	547	30	10,821	0.3
식품진흥기금	5,627	917	1,587	△670	4,957	△11.9
약취관리기금	49,634	996	5,112	△4,116	45,518	△8.3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1,416	888	1,349	△461	955	△32.6%
에너지사업기금	16,491	4,266	6,157	△1,890	14,600	△11.4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금	52,234	38,685	34,435	4,249	56,484	8
사회복지기금	11,572	324	570	△246	11,326	△2.1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	1,685	775	621	154	1,839	9
양성평등기금	4,772	97	215	△118	4,654	△2.47

* 자료 : 2023년 본예산 예결위 요구자료(4-4) 목록화

- 2023년 기금운용규모를 살펴보면, 16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1조 4,633억 원으로, 2022년 기금운용규모 1조 2,529억 원 대비 2,104억 원 증가하였음.

【기금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16개 기금	1,463,339 (676,090)	1,463,339 (676,090)	

※ () : 통합관리기금 제외 합계

* 자료 :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발채

- 2023년 기금별 운용규모를 살펴보면, 통합관리기금이 7,872억 원, 지역개발기금 2,658억 원, 재난관리기금 1,186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819억 원, 재해구호기금 614억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560억 원 순으로 나타남.

【기금별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52,881	100.0	1,463,339	100.0	210,458	16.8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3,978	0.3	3,512	0.2	△466	△11.7
통 합 관 리 기 금	566,365	45.2	787,249	53.8	220,884	39.0
지 방 채 상 환 기 금	50,292	4.0	53,353	3.6	3,061	6.1
지 역 개 발 기 금	308,990	24.7	265,818	18.2	△43,172	△14.0
재 난 관 리 기 금	96,671	7.7	118,554	8.1	21,883	22.6
재 해 구 호 기 금	48,039	3.8	61,413	4.2	13,374	27.8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88,764	7.1	81,912	5.6	△6,852	△7.7

기 금 명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농 어 촌 진 흥 기 금	3,159	0.3%	2,868	0.2%	△291	△9.2
식 품 진 흥 기 금	2,963	0.2	2,060	0.1	△903	△30.5
악 취 관 리 기 금	8,830	0.7	9,630	0.7	800	9.1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2,997	0.2	2,304	0.2	△693	△23.1
에 너 지 사 업 기 금	10,389	0.8	14,258	1.0	3,869	37.2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57,045	4.6	55,985	3.8	△1,060	△1.9
사 회 복 지 기 금	1,342	0.1	1,231	0.1	△111	△8.3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264	0.2	2,463	0.2	199	8.8
양 성 평 등 기 금	793	0.1	728	0.0	△65	△8.2

※ () : 통합관리기금 제외 합계

* 자료 : 2022년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발체

4. 기금별 운용계획안

1) 남북교류협력기금

□ 개 요

- 설치연도 : 2004년
- 설치근거 :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목 적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
- 재원조달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전년도 이월금, 기금운용수익금 등
- 지원기준 : 시민의 문화, 예술, 체육, 학술, 인도주의적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 지원대상 : 통일관련 기관 및 단체, 일반시민
- 존속기한 : 자체 (2025. 12. 31.)

□ 수입·지출 항목

수입(주된 재원)	지출(주된 사업)
○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그밖의 수입금(이자수입, 전년도이월금)	○ 인천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 시 차원에서의 사업 ○ 시 차원의 남북간 경제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 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연계되는 사회간접 자본 조성 사업비 지원 ○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한 사업 등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7,836	176	1,724	△1,548	6,288	△19.7

【수입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978	100	3,512	100	△466	△11.7
예 치 금 회 수	3,755	94.4	3,336	95	△419	△11.2
이 자 수 입	223	5.6	176	5	△47	△21

【지출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978	100	3,512	100	△466	△11.7
비 용 자 성 사 업 비	2,375	59.7	1,724	49.1	△651	△27.4

□ 총괄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지원을 위해 2004년 설치되어 운용해온 기금으로,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 19조(사업의 범위)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학술·역사·체육·관광·경제에 관한사항, 인도주의적인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2023년 수입 및 지출 계획은 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원(△11.7%) 감소하였음.

□ 수입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계획 상 주된 수입은 금융기관에 예치했던 공공예금 예치금회수 수입 33억 원임.

□ 지출

- 남북평화협력 추진지원사업은 총 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원 감소하였으며, 평화협력 기념행사 0.5억 원, 평화협력 사업 12억 원, 평화도시 공모사업 2억 원, 평화음악회 1.8억 원 등의 사업으로 지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인천시가 접경지역임을 감안하고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변화를 고려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해 보임.

2) 통합관리기금

□ 개 요

- 설치연도 : 2000년
- 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목 적 :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공공목적사업에 용자
- 재원조달 :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탁금 등
- 지원기준 : 지역사회 간접자본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기타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 지원대상 : 지역공공목적사업
- 존속기한 : 법정재량 (23.12.31.)

□ 수입·지출 항목

수입(주된 재원)	지출(주된 사업)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 타 기금의 여유자금 예탁금 수입 ○ 관리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 기타 수익금	○ 지역사회간접자본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의 용자 ○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 기타 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805,535	178,638	35,762	142,876	948,411	17.7

【수입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66,364	100.0	787,249	100.0	220,885	39.0
예탁금원금회수	29,666	5.2	48,667	6.2	19,001	64.1
예치금회수	190,245	33.6	559,943	71.1	369,698	194.3
예수금	335,400	59.2	160,800	20.4	△174,600	△52.1
이자수입	11,053	2.0	17,839	2.3	6,786	61.4

【지출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66,364	100.0	787,249	100.0	220,885	39.0
예탁금	20,000	3.5	303,781	38.6	283,781	1,418.9
예치금	514,120	90.8	447,706	56.9	△66,414	△12.9
예수금원리금상환	32,244	5.7	35,762	4.5	3,518	10.9

□ 총괄

- 통합관리기금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0년에 설치되어 운용해온 기금으로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지역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지역개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에 용자,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2023년 수입 및 지출 계획은 7,8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09억 원 (39.0%) 증가하였음.

□ 수입

- 통합관리기금의 수입 계획 상 주된 재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했던 공공예금 예치금회수 수입 5,599억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56억 원, 각 특별회계와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예수한 예수금수입*이 1,608억 원, 일반 사업비로 부서별로 예탁했던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487억 원임.

□ 지출

- 지출 계획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사업에 융자하여 주는 예탁금으로 총 3개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소상공인정책과) 1,50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교통정책과) 38억 원, 준공영제 재정지원(버스정책과) 1,500억 원으로, 총 3,038억 원을 예탁하였음. 타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예수해온 예수금에 대한 원금상환액은 지방채상환기금 60억 원, 지하도상가특별회계 20억 원,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117억 원으로 총 197억 원이며, 18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 161억 원으로 나타남.
- 통합관리기금은 타 회계 및 개별 기금의 여유재원을 적립하고, 재원이 필요한 타 회계·기금에 예탁하거나 전출하여 활용해야 하는 기금으로 적극 활용함.

* (타 회계 및 기금 예수 현황)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8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58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70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00억 원,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800억 원,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0억 원

** (예탁금 원금회수 현황) 고속도로재생과 36억 원, 노인정책과 20억 원, 캠프마켓과 119억 원, 공원조성과 51억 원, 수질환경과 49억 원, 산업진흥과 50억 원, 버스정책과 27억 원, 농축산유통과 28억 원, 복지정책과 107억 원

*** (예수금 이자상환 현황) 남북교류협력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약취관리기금, 에너지사업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하도상가특별회계,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 지방채상환기금

□ 개 요

- 설치연도 : 1999년
- 설치근거 :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 목 적 :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 및 관리·운용
- 재원조달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적립
- 지원기준 :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 지원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공사·공단 지방채
- 존속기한 : 자체 (2024. 12. 31.)

□ 수입·지출 항목

수입(주된 자원)	지출(주된 사업)
○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출연금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100이상 ※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 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상환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채무 상환 지원(특별히 필요시, 융자방식) ※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7,132	46,221	52,184	△5,963	1,169	△83.6

【수입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0,291	100	53,353	100	2,975	5.9
전 입 금	44,700	88.8	46,200	86.6	1,500	3.6
예 치 금 회 수	5,365	10.7	1,132	2.1	△4,233	△78.9
이 자 수 입	226	0.5	21	0.1	△205	△90.7
예 탁 금 원 금 회 수	0	0	6,000	11.2	6,000	100

【지출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0,291	100	53,353	100	2,975	5.9
차 입 금 상 환	39,605	78.7	34,780	65.2	△4,825	△12.2
이 자 상 환	9,641	19.2	17,404	32.6	7,763	80.5
예 치 금	1,045	2.1	1,169	2.2	124	11.8

□ 총괄

- 지방채상환기금은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9년에 설치되어 운용해온 기금으로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시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 특별히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경우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지원(원칙적 용자방식)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2023년 수입 및 지출 계획은 5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원(5.9%)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말 조성규모는 12억 원임.

□ 수입

- 지방채상환기금의 수입계획 상 주된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462억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60억 원, 금융기관에 예치했던 공공예금 예치금회수수입 12억 원,

□ 지출

- 지출 계획 중 가장 규모가 큰 사항은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348억 원이며, 차입금이자상환은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48억 원,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126억 원으로 편성되어있으며, 여유자금 12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함.

*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1,540억 원의 30% 인 462억 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출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

－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기금으로 적립 ※ 미적립액 : 해당없음

(단위 : 억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실제적립액	482.8	308.7	420.6	752.2	447.0	462.0
의무적립금액(30/100)	482.8	308.7	420.6	752.2	447.0	462.0

4) 지역개발기금

□ 개 요

- 설치연도 : 1989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 2017년(지역개발기금)
- 설치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목 적 :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사업,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최초설치 1989. 8. 21 / 기금 전환 2017. 1. 1.)
- 재원조달 :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수입(융자, 이자 등)
- 지원기준 : 지역개발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 지방공기업지원 등 자금지원
- 지원대상 : 지역개발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 지방공기업 지원,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자금
- 존속기한 : 법정재량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함

□ 수입·지출 항목

수 입	지 출
○ 시 일반회계 또는 타 특별회계의 출연금 ○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 － 매입대상(3가지) * 자동차 등록(신규·이전), 도로점용·개발행위 등 인허가 * 계약체결(공사, 용역, 물품) － 발행조건 : 연1.25% 복리, 5년만기 원리금 일시 상환 ○ 기금운용 수익금(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 정부지원금과 정부융자금 ○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상환 － 대상 : 5년전 발행 및 그 이전 발행분 － 원리금 일시상환(당시 발행금리 적용) ○ 지역개발기금 융자(→市, 군구, 공사공단) － 융자대상(4분야) * 주민복지증진사업, 지역개발사업 * 지방공기업, 지방채 차환자금에 융자 － 융자조건 : 연 2.5%(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947,058	185,736	134,259	51,477	998,535	5.4

【수입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08,990	100	265,818	100	△43,172	△14.0
차입금	153,596	49.7	158,900	59.8	5,304	3.5
융자금회수(이자포함)	1,023	0.3	2,602	1.0	1,579	154.3
예탁금원금회수	70,763	22.9	74,977	28.2	4,214	6.0
예치금회수	61,042	19.8	5,105	1.9	△55,937	△91.6
이자수입	22,566	7.3	24,234	9.1	1,668	7.4

【지출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08,990	100	265,818	100	△43,172	△14.0
비용자성사업비	5	0.002	5	0.002	0	0
예탁금	163,109	52.8	82,812	31.2	△80,297	△49.2
예치금	19,522	6.3	48,747	18.3	29,225	149.7
차입금원리금상환	126,354	40.9	134,254	50.5	7,900	6.3

□ 총괄

- 지역개발기금은 1989년에 설치되어 운용해온 기금으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운용)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2023년 수입 및 지출계획은 2,6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2억 원(△14.0%) 감소하였으며, 2023년도말 조성규모는 9,985억 원임.

□ 수입

- 지역개발기금의 수입계획 상 주된 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1,589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은 19개 부서 750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은 24개 부서 242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수입 51억 원이 있음.

□ 지출

- 지출 계획 중 가장 규모가 큰 사항은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1,261억 원으로 대부분 '23년 상환만기 도래('18년 발행분) 채권의 원금을 지급(1,253억 원, 99.4%)하는 것이며, 일부 청구되지 않은 지난년도('08~'18년) 채권 원금상환 지급(6.3억 원, 0.5%) 및 착오매입으로 인한 중도상환 예상 지급분(1.3억 원, 0.1%)로 구성되어 있음. 여유자금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 노후관교체공사에 566억 원 및 영유아정책과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에 102억을 예탁하기로 함. 예탁 후 여유재원 487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함.

*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1. 자동차 신규등록(2,000cc이상(일반형)만 매입의무가 있고, 나머지 차량은 2023.12.31.까지 면제) 2. 자동차 이전등록 3. 각종 허가(점용 및 사용허가) 4. 각종 계약(공사, 용역, 물품)

** (예탁금 원금회수 현황) 정보화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산업진흥과, 전략산업과, 보건의료정책과, 노인정책과, 교통정책과, 철도과, 교통관리과, 도로과, 문화유산과, 꽃육진흥과, 도시개발과, 재생정책과, 환경기후정책과, 수질환경과, 공원조성과, 해양항만과, 캠프마켓과

5) 재난관리기금

□ 개 요

- 설치연도 : 1998년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목 적 : 재난과 재해의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 재원조달 :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입금
- 지원기준 :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5조 기금의 용도에 적합한 사업, 기타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지원대상 : 재난 예방사업 및 응급 복구사업
- 존속기한 : 법정의무

□ 수입·지출 항목

수입(주된 재원)	지출(주된 사업)
○ 일반회계 전입금(법정 적립금) -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 ○ 기금의 운용수입 ○ 그 밖의 수입금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 경비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각종 재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안내판 제작 -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내 준설, 풀베기 등 -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 요인 제거 및 시설물(시 및 군·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한함) 보수·보강, 철거 -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와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80,106	38,448	49,613	△11,165	68,941	△13.9

【수입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6,670	100	118,554	100	21,884	22.6
전 입 금	34,030	35.2	37,789	31.8	3,759	11
보 조 금	8,568	8.8	0	0	△8,568	△100
예 치 금 회 수	53,412	55.3	80,105	67.6	26,693	49.9
이 자 수 입	610	0.6	610	0.5	0	0
기 타 수 입	50	0.1	50	0.1	0	0

【지출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6,670	100	118,554	100	21,884	22.6
비 용 자 성 사 업 비	67,856	70.2	49,245	41.5	△18,611	△27.4
인 력 운 영 비	246	2.3	368	0.4	121	49.2
예 치 금	28,567	27.5	68,941	58.1	40,374	141.3

□ 총괄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설치된 법정 의무기금으로 1998년에 설치되어 운용해온 기금으로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 교육 및 훈련경비,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해예방 지자체 관리하천 내 준설, 재난수습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2023년 수입 및 지출계획은 1,1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9억 원(22.6%)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말 조성규모는 689억 원임.

□ 수입

-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 상 주된 재원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78억 원*이며, 금융기관 예치금회수 수입은 801억 원, 그 밖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원 등이 있음

□ 지출

- 지출계획 주된 사업을 살펴보면, 안전정책과에 편성되어 종합건설본부로 재배정되는 재난대비 긴급 도로유지보수 161억 원, 교량 보수보강공사 115억 원이 편성되었고, 자연재난과에는 매년 지속되는 사업으로 빗물펌프장 관리비 41억 원, 유수지 유지관리비 23억 원이 편성되었고, 재난상황과는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지원 41억 원, 감염병관리과에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비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과에는 열선시스템 설치사업 7.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녹지정책과에는 가로수 위험성평가 진단사업 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과 재해의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으로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운영 상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회의결을 필요하는 기금으로 향후 긴급한 재난재해 예방사업이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미적립액 : 해당없음

(단위 : 억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계획)
실제적립액	336.5	666.9	552.7	1678.9	940.3	378.0
법정적립액(1/100)	253.6	285.5	304.0	322.9	340.3	378.0

6) 재해구호기금

□ 개 요

- 설치연도 : 2006년 (사회복지기금에서 분리, 2006. 10. 16.)
- 설치근거
 - 재해구호법 제14조,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 목 적 :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응급적인 구호사업 지원
- 재원조달 :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
- 지원기준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존속기한 : 법정의무

□ 수입·지출 항목

수입(주된 재원)	지출(주된 사업)
○ 일반회계 전입금 (법정적립금) -(연간) 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0.5% -(누적) 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3% ○ 기금의 운용수익금 ○ 기타 수입금	○ 사망자와 실종자의 유족위로금과 생계보조금 ○ 생계구호 ○ 식품, 의류, 침구 등 생활필수품의 지급 ○ 비축물자의 구입 ○ 주택구호(응급주택수리 및 복구지원 등) ○ 접수된 재해의연금품의 지원에 필요한 제반 경비 ○ 기타 재해구호사업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의 비용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42,203	19,211	3,800	15,411	57,614	35

【수입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8,039	100	61,413	100	13,374	27.8
전 입 금	17,015	35.4	18,894	30.8	1,879	11
예 치 금 회 수	30,847	64.2	42,203	68.7	11,356	36.8
이 자 수 입	176	0.4	316	0.5	140	79.5

【지출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48,039	100	61,413	100	13,374	27.8
비 용 자 성 사 업 비	4,487	9.3	3,800	6.2	△687	△15.3
예 치 금	43,552	90.7	57,613	93.8	14,061	32.3

□ 총괄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 시 응급적인 구호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법정 의무기금으로 2006년에 설치되어 운용해온 기금으로 「인천광역시 재해구호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재해구호사업 등, 사망자와 실종자의 유족위로금과 생계보조금, 생계구호, 식품·의류·침구 등 생활 필수품의 지급, 비축물자의 구입, 주택구호(응급주택수리 및 복구지원)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2023년 수입 및 지출계획은 6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억 원(27.8%)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말 조성규모는 572억 원임.

□ 수입

- 재해구호기금의 수입계획 상 주된 재원은 일반회계전입금 189억 원*이며, 금융기관 예치금회수 수입은 422억 원, 그 밖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원이 있음.
- '07~'17년까지의 미적립에 대하여 지난년도까지 추가 적립하여 적극 해소 하였으나, 2023년도말 기준 미적립액은 276억 원으로 나타남.

□ 지출

- 지출계획 주된 사업을 살펴보면, 재해구호물품구입 2억 원, 응급구호비 및 임시주거시설 지원 10억 원,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 20억 원, 무더위 및 한파쉼터 냉난방비 지원 2억 원, 구호물자창고 정비 1억 원, 전시구호물자 구입 1억 원, 임시주거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 및 관리 1.5억 원이 편성되었고, 그 외 여유재원 576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함.
- 재해구호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마찬가지로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도 의회의결을 필요하는 기금으로, 재해 발생시 응급적인 구호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법정기금인 만큼 향후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재해구호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재해구호법」 제14조, 제15조

-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적립 이하로 적립 할 수 있음

※ 2023년 기준 미적립액 : 276억 원

- ' 07~' 17년 미적립 892억, ' 18년 미적립 64억, ' 21년 및 ' 22년 해소(추가적립) 80억, 600억
(단위 : 억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계획)
실제적립액		63.1	142.7	152.0	241.0	770.2	189.0
누적집행잔액		377.9	520.0	131.1	359.2	422.0	576.1
의무 적립액	연간(5/1000)	126.8	142.7	152.0	161.5	170.2	189.0
	누적(30/1000)	760.9	856.5	912.0	968.8	1,020.9	1,133.7

7) 중소기업육성기금

□ 개 요

- 설치연도 : 1993년
- 설치근거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목 적 :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시장진흥 및 시장의 현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재원조달 : 일반회계 출연금, 정부차입금(중소기업진흥공단), 기금운용수익금
- 지원기준 : 융자한도(일반중소기업 30억 원 이내, 벤처기업 7억 원 이내)
- 지원대상 : 산업구조고도화, 제조업, 소상공인, 시장 재개발 등
- 존속기한 : 법정재량 (2024.12.31.)

□ 수입·지출 항목

수입(주된 재원)	지출(주된 사업)
○시, 군·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그 밖의 수입금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시 출연 보증기관의 기업 보증 지원을 위한 자금 출연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 문화, 취미 동호회 등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의 보전 ○기금의 관리·운용 및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 경비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46,526	37,691	55,364	△17,673	28,853	△37.9

【수입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8,764	100.0	81,912	100.0	△6,852	△7.7
전 입 금	2,500	2.8	2,500	3.1	0	0
융자금회수(이자포함)	56,847	64.1	34,918	42.6	△21,929	△38.6
예 치 금 회 수	29,118	32.8	44,221	53.9	15,103	51.9
이 자 수 입	299	0.3	273	0.4	△26	△8.7

【지출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8,764	100.0	81,912	100.0	△6,852	△7.7
비 용 자 성 사 업 비	15,538	17.5	15,365	18.7	△173	△1.1
융 자 성 사 업 비	47,000	52.9	40,000	48.9	△7,000	△14.9
예 치 금	26,226	29.6	26,547	32.4	321	1.2

□ 총괄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육성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3년에 설치되어 운용해온 기금으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사업·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등에 대한 융자 및 지원, 시 출연 보증기관의 기업 보증 지원을 위한 자금 출연,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 문화, 취미 동호회 등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의 보전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2023년 수입 및 지출계획은 8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원(△7.7%) 감소하였으며, 2023년도말 조성규모는 289억 원임.

□ 수입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 상 주된 재원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며 2023년은 318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년 대비 △238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2022년 고용보장연계 특별자금 융자회수 완료('22년 9월, 294억 원)에 따라 감소한 것이며, '22년 융자 조기상환 및 이자 증가에 따라 '23년 예치금회수 수입이 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1억 원 증가하였음.

□ 지출

- 지출계획 주된 사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사업 504억 원 으로, 이는 인천혁신모펀드 조성* 150억 원, 구조고도화자금 민간융자금** 350억 원,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2.5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만큼 자금관리를 위하여 시행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관리가 필요하며,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지원기준에 맞게 공평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인천혁신모펀드 조성) 지자체 마중물 사업으로 민간자금(기업 및 금융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재정·정책자금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민간자본 경제로 전환코자, 2021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출자 분야별 市 출자액의 3배이상 관내 기업에 의무투자를 조건으로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1.01 ~'32.12.(출자 '21~'27*, 회수 '25~'31, 청산 '32)
- * 인천시 출자 '21~'24(4년간 총 600억원), 민간 '21~'27(7년간 총 600억원)
- (총사업비) 6,000억원[시비, 기타(민자등)] ○ (시행주체)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단위 : 억 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시 비 (중소기업육성기금)	민 간 (모태펀드 및 민간투자)	
총 계	600	5,400	6,000
2021	100	900	1,000
2022	150	1,350	1,500
2023	150	1,350	1,500
2024	200	1,800	2,000

** (구조고도화자금 민간융자금) 제조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장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소요자금 저리 융자

- (융자대상) 중소기업 기계구입, 공장확보, 벤처창업, 재해기업 등 ○ (시행주체) 인천테크노파크

8) 농어촌진흥기금

□ 개 요

- 설치연도 : 1998년
- 설치근거 :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목 적 :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 증대 사업 지원 등 농어촌의 발전 도모
- 재원조달 :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기금운영 수익금, 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 농어업인 융자 지원사업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별 별도기준 적용, 농업인 단체(3개 단체) 사업지원 등
- 지원대상 :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 농업인 학습단체
- 존속기한 : 법정재량 (2026.12.31.)

□ 수입·지출 항목

수입(주된 재원)	지출(주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기금의 운용 수익금 ○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납입액의 4% ○ 그 밖의 수익금	○ 사업비 지원에 대한 보조 – 농어촌소득증대 및 시범영농사업 – 농어업인의 자녀학자금 지원 – 농어업인의 교육훈련 사업 – 농어업인의 교류연찬 및 협력사업 – 농지의 보전·관리 및 농지관리정보화 사업 ○ 융자에 대한 이차차액보전 및 수수료 ○ 농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10,791	577	547	30	10,821	0.3

【수입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160	100	2,868	100	△292	△9.3
예탁금원금회수	2,800	88.6	2,291	79.9	△509	△18.2
이자수입	209	6.7	237	8.2	28	13.4
기타수입	151	4.7	340	11.9	189	125.2

【지출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3,159	100	2,868	100	△291	△9.3
비용자성사업비	1,150	36.4	547	19.1	△603	△52.5
예치금	2,009	63.6	2,321	80.9	312	15.6

□ 총괄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 증대사업 지원 등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8년에 설치되어 운용해온 기금으로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에 따라 농어촌사업(제8조 사업비 지원) 지원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및 수수료, 농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2023년 수입 및 지출계획은 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9.3%) 감소하였으며, 2023년도말 조성규모는 108억 원임.

□ 수입

-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계획 상 주된 재원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입이며 2023년은 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원 증가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이 1.8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회수수입이 23억 원임.

□ 지출

- 지출계획 주된 사업을 살펴보면, 우수농업인 50명을 선정하여 해외 선진농업현장을 견학하는 우수사례 벤치마킹사업 0.5억 원, 6차산업 우수농가 현지연찬교육과 농업경영인 가족 수련대회 등 0.45억 원, 농촌지도자생활개선한마음대회와 우수농산물 전시판매운영비 지원에 0.5억 원, 융자금 이자의 3~5% 범위내 융자금 이차보전비 지원 2억 원, 농업인 농업전문지 구독료 지원 1.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여유재원 23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함.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 증대사업지원 등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영 되는 기금으로 2023년 수입·지출계획액 29억 원 중 사업비 19.1%(6억 원)이며 금융기관 예치금 80.9%(23억 원)으로 2022년 사업비 36.4%(1.5억원), 예치금 63.6%(20억 원)에 비해서도 사업비의 구성비가 낮음. 향후 해당 기금의 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인을 위한 사업을 구상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9) 식품진흥기금

□ 개 요

- 설치연도 : 1986년 (보건복지부 설치 후 1989년 시·도이관)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목 적 : 식품위생과 국민 영양수준 향상
- 재원조달 : 식품위생법상과징금 처분에 의한 수입 및 위생단체출연금 등
- 지원기준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에 따른 목적사업 수행
- 지원대상 : 군·구 관련위생단체, 식품영업주
- 존속기한 : 법정의무

□ 수입·지출 항목

수입(주된 재원)	지출(주된 사업)
○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육성지원 ○ 영업자의 위생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우수업소 지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지원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5,627	917	1,587	△670	4,957	△11.9

【수입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963	100.0	2,060	100.0	△903	△30.5
용자금회수(이자포함)	141	4.8	101	4.9	△40	△28.4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예 치 금 회 수	1,703	57.5	1,143	55.5	△560	△32.9
이 자 수 입	119	4	116	5.6	△3	△2.5
기 타 수 입	1,000	33.7	700	34	△300	△30

【지출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963	100.0	2,060	100.0	△903	△30.5
비 용 자 성 사 업 비	1,496	50.5	1,267	61.5	△229	△15.3
용 자 성 사 업 비	300	10.1	300	14.6	—	—
예 치 금	1,147	38.7	473	23	△674	△58.8
기 타 지 출	20	0.7	20	1	—	—

□ 총괄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국민영양향상 등 식품산업발전 사업 지원을 위해 1989년에 설치되어 운용해온 기금으로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용자사업 등)에 의거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용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2023년 수입 및 지출계획은 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30.5%) 감소하였으며, 2023년도말 조성규모는 50억 원임.

* 식품위생법 제89조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0.3.26, 2015.5.18, 2016.12.2>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 수입

-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 상 주된 재원은 과징금으로 2023년은 7억 원이며, 전년 대비 △3억 원 감소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1억 원으로 전년 대비 0.4억 원 감소하였고,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수입은 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원 감소하였음.
- 식품진흥기금은 1986년 설치되어 36년간 운영되어 온 기금으로,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등의 수입으로 운용되는 기금임.

□ 지출

- 지출계획 주된 사업을 살펴보면, 식품산업진흥 등 유관단체지원 0.6억 원,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지원 0.8억 원,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 0.3억 원,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 민간융자금 3억 원, 식중독 예방사업 0.3억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2.4억 원, 군구 과징금 귀속금 4.2억 원, 인천음식문화박람회 3억 원 등의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여유재원 4.7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함.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은 0.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0.2억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세부사업 중 음식브랜드 등 식품홍보 사업을 일몰한 것으로 보여 일몰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해당 기금은 매년 반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의 식품위생 향상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10) 악취관리기금

□ 개 요

- 설치연도 : 2018년
- 설치근거 :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목 적 : 남동구 및 서북부 지역 사업장 악취 효과적 관리, 시민건강 보호 및 체감환경 개선
- 재원조달 : 논현2택지개발사업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연금, 수익금 및 이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 지원기준 : 사업장 당 최대 3억 원 (2년 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지원대상 : 남동구 및 서북부 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존속기한 : 자체 (2027.12.31.)

□ 수입·지출 항목

수입(주된 자원)	지출(주된 사업)
○ 공공기관이 출연한 자금 ○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악취관리사업을 위한 융자 ○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악취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49,634	996	5,112	Δ4,116	45,518	Δ8.29

【수입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830	100	9,630	100	800	9.06
융자금회수(이자포함)	9	0.10	48	0.49	38	422.22
예치금회수	7,884	89.29	8,634	89.66	750	9.51
이자수입	937	10.61	949	9.85	12	1.28

【지출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830	100	9,630	100	800	9.06
비용자성사업비	79	0.89	81	0.84	2	2.53
융자성사업비	5,000	56.63	5,000	51.92	0	0
인력운영비	35	0.40	31	0.32	Δ4	Δ11.43
예치금	3,716	42.08	4,518	46.92	802	21.58

□ 총괄

- 악취관리기금은 남동구 및 서북부지역 사업장 악취의 효과적 관리, 시민건강 보호 및 체감환경 개선을 위해 2018년에 설치되어 운용해온 기금으로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악취관리 사업을 위한 용자,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악취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2023년 수입 및 지출계획은 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9.1%) 증가 하였으며, 2023년도말 조성규모는 455억 원임.

□ 수입

- 악취관리기금의 수입계획 상 주된 재원은 예치금회수수입이 86억 원으로 총 수입 중 8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이 9억 원으로 9.9% 가까이 구성되어 있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0.5억 원으로 0.5%를 차지함.

□ 지출

- 지출계획 주된 사업*은 남동구지역 악취배출사업비 악취방지시설 개선자금 무이자 융자 등 25.7억 원, 서북부지역 악취배출사업비 악취방지시설 개선 자금 무이자 융자 등 25.4억 원이며, 여유재원 45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함.

* 남동구지역 및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 사업비

- (사업대상) 남동구지역(남동공단, 남촌동, 고잔동, 논현동) 및 서북부지역(계양구 및 서구) 소재 중소기업
- (주요내용) 악취방지시설의 교체 및 개·보수 등 악취 개선 사업비 융자
 - － 지원규모 : 최대 3억원/사업장
 - － 상환기간 :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11)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 개 요

- 설치연도 : 2021년
- 설치근거 :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목 적 :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지원
- 재원조달 :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특별회계·일반회계 전입금
- 지원기준 :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
- 지원대상 : 서구(가좌1동, 석남2동, 신현원창동), 동구(송현3동, 송림 4,6동)
- 존속기한 : 자체 (2025.12.31.)

□ 수입·지출 항목

수입(주된 자원)	지출(주된 사업)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1,416	888	1,349	△461	955	△32.6%

【수입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911	100	2,304	100	△607	△20.9
전 입 금	2,051	70.5	—	—	순감	순감
예 치 금 회 수	—	—	1,416	61.5	순증	순증
이 자 수 입	10	0.3	12	0.5	2	17.8
기 타 수 입	850	29.2	876	38.0	26	3.1

【지출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911	100	2,304	100	△607	△20.9
비 용 자 성 사 업 비	1,495	51.4	1,349	58.6	△147	△9.8
예 치 금	1,416	48.6	955	41.4	△461	△32.6

□ 총괄

-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 지원을 위해 2021년에 설치되어 운용해온 기금으로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2023년 수입 및 지출계획은 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원(△20.9%) 감소하였으며, 2023년도말 조성규모는 10억 원임.

□ 수입

-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의 수입계획 상 주된 재원은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분뇨처리수수료 8.8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수입 14억 원임.

□ 지출

- 지출계획 주된 사업을 살펴보면, 가좌하수처리시설 주변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서구) 2.6억 원, 건지로284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서구) 2.3억 원,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서구) 1.8억 원, 인천교 녹지 산책로 조성 및 야외 운동기구 설치(동구) 1억 원, 송현근린공원 계단 및 쉼터 정비공사(동구) 2.8억 원이며, 여유재원 9.5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함.
-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2021년 설치된 기금으로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기피혐오시설 주변의 시민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구상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분뇨처리시설이므로 주변지역 시민들이 실질적인 편익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12) 에너지사업기금

□ 개 요

- 설치연도 : 1992년
- 설치근거 :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목 적 :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등
- 재원조달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주식배당금 등
- 지원기준 :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비의 70%이내 용자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보조금 지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의 80%이내 용자지원 등
- 지원대상 :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자,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
- 존속기한 : 자체 (2026.12.31.)

□ 수입·지출 항목

수입(주된 자원)	지출(주된 사업)
○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출연금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 한국가스공사의 주식배당금 ○ 인천종합에너지(주)의 주식배당금 ○ 기타 수입금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교체사업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 「에너지법」에 따른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 및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용자 ○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16,491	4,266	6,157	△1,890	14,600	△11.4

【수입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388	100	14,257	100	3,868	37.2
융자금회수(이자포함)	2,260	21.8	2,569	18.0	309	13.7
예 치 금 회 수	5,530	53.2	9,991	70.1	4,460	80.6
이 자 수 입	231	2.2	230	1.6	△1.7	△0.8
기 타 수 입	2,367	22.8	1,467	10.3	△900	△38.0

【지출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388	100	14,257	100	3,868	37.2
비 용 자 성 사 업 비	2,389	23.0	3,017	21.2	627	26.2
융 자 성 사 업 비	3,500	33.7	3,140	22.0	△360	△10.2
예 치 금	4,499	43.3	8,100	56.8	3,600	80.0

□ 총괄

- 에너지사업기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등을 위해 1992년에 설치되어 운용해온 기금으로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사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에너지법」에 따른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 및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한 융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2023년 수입 및 지출계획은 1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원(37.2%)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말 조성규모는 146억 원임.

□ 수입

- 에너지사업기금의 수입계획 상 주된 재원은 도시가스 및 태양광발전 사업자 융자금원금 회수수입으로 24.5억 원이며, 한국가스공사 및 인천종합에너지(주) 주주배당금 수입 각각 2.7억 원 및 12억 원이 있고,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수입 100억 원 등 편성됨.

□ 지출

- 지출계획의 주된 사업을 살펴보면,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 25억 원, 신재생 에너지 설비보급사업 33억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3억 원이며, 여유재원 81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함.
- 에너지사업기금은 전년 대비 계획액이 39억 원 증가로 3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출사업의 증가는 3억 원이며, 여유재원 예치금이 36억 원 증가하여, 사업비는 4.6% 증가한데 반해 예치금은 80% 증가하였음. 기금 운용의 목적이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으로 여유재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개 요

- 설치연도 : 1994년
- 설치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8조, 제59조
- 목 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
- 재원조달 : 관리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임대주택 수입금, 지방소비세 및 일반회계 전입금
- 지원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따른 특례법에 의한 사업
- 지원대상 : 정비기반시설 조성, 임대주택 관리, 매몰비용 지원, 마을주택 관리소 지원 등
- 존속기한 : 법정의무

□ 수입·지출 항목

수입(주된 자원)	지출(주된 사업)
○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회수된 융자금 및 그 이자 ○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탁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 ○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인수한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입 또는 차입이 있는 경우 그 수입 또는 차입금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초조사비, 주거환경 조성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정비기반시설, 임시수용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에 드는 비용 ○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 정비사업을 위한 교육 및 주거환경 정책사업에 드는 비용 ○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프로그램시스템의 운영 비용 ○ 국고융자금 상환 ○ 정비사업 관련 연구용역 및 홍보비 ○ 정비사업의 추진에 따른 빈집관리, 방법 및 거주자의 생활안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구의 사업비 보조 ○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 빈집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드는 비용 ○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52,234	38,685	34,435	4,249	56,484	8

【수입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7,045	100	55,985	100	△1,060	△2
전 입 금	0	0	31,116	56	31,116	100
보 조 금	15,623	27	6,420	11	△9,203	△59
예 치 금 회 수	40,388	71	17,300	31	△23,088	△57
이 자 수 입	914	2	974	2	60	7
기 타 수 입	121	0	175	0	55	45

【지출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7,045	100	55,985	100	△1,060	△2
비 용 자 성 사 업 비	49,110	86	34,435	62	△14,675	△30
예 탁 금	0	0	8,000	14	8,000	100
예 치 금	7,935	14	13,550	24	5,615	71

□ 총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1994년에 설치되어 운용해온 기금으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9조(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초조사비, 주거환경 조성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비용,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2023년 수입 및 지출계획은 5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원(2.0%) 감소하였으며, 2023년도말 조성규모는 565억 원임.

□ 수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계획 상 주된 재원은 지방소비세의 5%인 276억 원, 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대금(30%) 발생 수입 35억 원, 영구임대주택 관리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등 64억 원, 공공임대주택관리 임대료 수입 1.8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수입 173억 원으로 나타남.

□ 지출

- 지출계획 주된 사업을 살펴보면,
 - 주택정책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영구임대주택 사업(우리집 1만호 공급프로젝트)으로 남촌지역 2.3억 원, 청천지역 4.3억 원이 있고,
 - 인천도시공사로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공모매입형 영구임대주택 사업 88억 원, 공공임대주택 관리대행사업비 4.5억 원이 있으며,
 - 기초자치단체(군·구)로 지원하는 정비사업지원으로는 재건축사업 정밀안전진단비용 지원 1.5억 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지원 8억 원, 빈집정비 사업 보조 5억 원, 빈집실태조사 1억 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44억 원,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130억 원, 행복마을 가꿈사업 30억 원,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보조 20억 원, 정비사업구조개선 및 해재구역 관

리를 위한 사업비가 5억 원 편성되었음.

- 사업비 지출 이외의 여유재원 80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135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지출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 전입금과 보조금의 소계는 375억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액의 67%를 차지하고 이는 반면, 예탁금 및 예치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344억 원으로 62%를 구성하고 있어, 2023년의 여유재원이 215억 원으로 나타남.
- 또한 해당 기금은 매년 지방소비세의 5%*에 해당하는 금액(2023년 276억 원)을 의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고 있는 상황으로 항상 기금재원의 여유가 있으므로, 재원부족으로 인해 일반회계에 미처 담지 못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 사업의 경우 해당 기금을 활용하여 각 10개 군·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분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금을 운용하여 전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반회계 재원의 부족분을 채워주고, 또한 확장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미적립액 : 해당없음

(단위 : 억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실제적립액	156.5	363.6*	247.8**	—	276
의무적립금액(5/100)	156.5	152.9	210.7	247.8	276

* ' 20~' 21년 적립액을 ' 20년에 적립하였음(152.9 억 원 + 210.7 억 원 = 363.6억 원

** ' 22년 적립액을 ' 21년에 미리 적립하였음

14) 사회복지기금

□ 개 요

- 설치연도 : 1994년
- 설치근거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 목 적 :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 추진
- 재원조달 : 기금 운용 수익금(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 사회복지시책 홍보 등, 시 및 군구에서 인정하는 자활기업 및 사업단, 시노인회 및 군구 노인회 운영지도육성 및 노인복지증진
- 지원대상 : (사회복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기초생활보장)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노인복지)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
- 존속기한 : 자체 (2026.12.31)

□ 수입·지출 항목

수입(주된 자원)	지출(주된 사업)
○ 시의 출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3에 의한 자원 (다만, 기초생활보장사업에 한한다.) ○ 기금의 운용 수익금 ○ 기타 수입금	○ 사회복지사업 ○ 노인복지사업 ○ 기초생활보장사업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11,572	324	570	△246	11,326	△2.1

【수입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41	100	1,231	100	△110	△8.2
예탁금원금회수	300	22.4	0	0	△300	△100
예치금회수	687	51.2	907	73.7	220	32.0
이자수입	224	16.7	224	18.2	0	0
기타수입	130	9.7	100	8.1	△30	△23.0

【지출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41	100	1,231	100	△110	△8.2
비용자성사업비	469	35.0	471	38.3	2	0.4
용자성사업비	100	7.4	100	8.1	0	0
예치금	772	57.6	660	53.6	△112	△14.5

□ 총괄

-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1994년에 설치되어 운용해온 기금으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2023년 수입 및 지출계획은 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8.2%) 감소하였으며, 2023년도말 조성규모는 113억 원임.

□ 수입

-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 상 주된 재원은 예치금회수수입 9억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2.2억 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단 만기도래, 해체 등에 따른 현금·물품을 정산하여 반납하는 그 외수입 1억 원임.

□ 지출

- 지출계획 주된 사업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대여(민간융자금) 1억 원,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 지원 3.4억 원으로 자활 행사 0.4억 원, 꿈이든사업장 설치지원·자활취업프로젝트 등 2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지시책(지역사회보장협의체간 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0.8억 원, (사)대한노인회육성 활동지원 등 0.5억 원이며, 여유재원 6.6억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함.

15)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개 요

- 설치연도 : 2017년 (제정 2014년)
- 설치근거 :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목 적 :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을 통한 지역주민 복지혜택 및 삶의 질 향상 추구
- 재원조달 :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
- 지원기준 :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공동사업, 소득향상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기금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화장시설 주변지역
- 존속기한 : 법정재량 (2026.12.31.)

□ 수입·지출 항목

수입(주된 자원)	지출(주된 사업)
○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10 ○ 기금운용 수익금	○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 ○ 공동사업, 소득향상사업, 복지증진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1,685	775	621	154	1,839	9

【수입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296	100	2,460	100	164	7.1
전 입 금	631	27	750	30	119	18.9
예 치 금 회 수	1,377	60	1,685	69	308	22.4
이 자 수 입	20	1	25	1	5	25
기 타 수 입	268	12	0	0	△268	△100

【지출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296	100	2,460	100	164	7.1
비 용 자 성 사 업 비	611	27	621	25	10	1.6
예 치 금	1,685	73	1,839	75	154	9.1

□ 총괄

-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지원 등을 위해 2017년에 설치되어 운용해온 기금으로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용도)에 따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 소득향상사업,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2023년 수입 및 지출계획은 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7.1%) 증가 하였으며, 2023년도말 조성규모는 18억 원임.

□ 수입

-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 수입계획 상 주된 재원은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 일반회계전입금 7.5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0.3억 원, 금융기관예치금회수수입 17억 원이 있음.

□ 지출

- 지출계획 주된 사업을 살펴보면,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각 군·구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46개 사업* 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 행정복지센터 1개 사업당 1백만원 ~ 4천만원 사이의 소규모 사업비이지만, 각 군구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지원 후 여유재원 18억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함.
-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의 경우, 인천시가 해당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주체임에도 모든 사업이 기초자치단체(군·구)에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사업과 인천시설공단으로 위탁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없어, 향후 해당 기금의 설립·운용 취지 맞게 시에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구상해 볼 필요가 있음.

*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총 48개 지원

※ 2개 사업은 5개 동, 3개 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사업수의 합이 불일치)

- (간석3동) 반찬드림 쿠폰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
- (부평2동) 출산 축하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 (부평3동) 부평3동 어울림문화축제 개최 등 12개 사업
- (부평6동) 부평6동 동수문화축제 개최 등 12개 사업
- (십정2동) 쓰레기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클린존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
- (만수3동) 만삼이네 마을축제 등 7개 사업
- (인천가족공원) 2023년 인천가족공원 명절 어버이날 성묘 대책 운영
- (시 노인정책과) 사무관리비

16) 양성평등기금

□ 개 요

- 설치연도 : 1997년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7조
- 목 적 : 양성평등실현 촉진
- 재원조달 :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지원기준 : 양성평등 공모사업,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 지원대상 : 시 소재 여성단체 및 비영리법인, 군·구추천 한부모가족
- 존속기한 : 법정재량 (2024. 12. 31.)

□ 수입·지출 항목

수입(주된 자원)	지출(주된 사업)
○ 시 출연금 ○ 기금의 운용 수익금 ○ 그밖의 수입금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5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양성평등의 국제교류증진사업의 지원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영·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조성규모】

(단위 : 백만 원, %)

2022년도말 조성액(a)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d)		
4,772	97	215	△ 118	4,654	△2.47

【수입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93	100	728	100	△65	△8
예 치 금 회 수	703	89	631	87	△72	△10
이 자 수 입	89	11	97	13	7	8

【지출계획】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93	100	728	100	△65	△8
비 용 자 성 사 업 비	220	28	215	30	△5	△2
예 치 금	573	72	513	70	△60	△10

□ 총괄

-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복지증진사업 등을 위해 1997년에 설치되어 운용해 온 기금으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조례 제50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제6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의 사업의 지원, 양성평등의 국제교류 증진사업의 지원,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2023년 수입 및 지출계획은 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8.0%) 감소 하였으며, 2023년도말 조성규모는 47억 원임.

□ 수입

- 양성평등기금의 수입계획 상 주된 재원은 금융기관 예치금회수수입 6.3억 원과 예탁금이자수입 0.9억 원 등으로 구성됨.

□ 지출

- 지출계획 전체 사업을 살펴보면, 양성평등사업 0.7억 원,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지원 1.2억 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0.25억 원임.
- 양성평등기금은 16개 기금 중 가장 작은 규모의 수입·지출계획으로 운용되고 있음. 향후,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해당 기금의 운용목적에 따라 적극 운용할 필요가 있음.

5. 기금 운용계획안 총괄 검토

- 2023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살펴보면, 이자수입, 전입금 등 외의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편성하여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기금 재원을 활용한 고유 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도록 명기하고 있으므로, 각 기금별 재원 운용방법 등에 대한 검토과 같이 각 여유재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해당 각 기금의 설치·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임.

Ⅲ

심사 결과

1. 심사결과 : 수정가결

기금명	사 업 명(과목명)	지출액 (A)	상임위 조정		증감액 (D=B+C)
			증 액(B)	감 액(C)	
재난관리기금	안전문화대중교통 등 홍보(참여예산)(사무관리비)	346,000	-	△ 346,000	△ 346,000
재난관리기금	시민행동요령 제작(참여예산)(사무관리비)	16,000	-	△ 16,000	△ 16,000
재난관리기금	금융기관 예치금(신한은행)(일반예치금)	53,324,112	362,000	-	362,000
남북교류협력기금	평화음악회(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0,000	-	△ 180,000	△ 180,000
남북교류협력기금	금융기관 예치금(신한은행)(일반예치금)	-	180,000	-	180,000

가.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52,881	100.0	1,463,339	100.0	210,458	16.8
남 북 교 류 협 력 기 금	3,978	0.3	3,512	0.2	△466	△11.7
통 합 관 리 기 금	566,365	45.2	787,249	53.8	220,884	39.0
지 방 채 상 환 기 금	50,292	4.0	53,353	3.6	3,061	6.1
지 역 개 발 기 금	308,990	24.7	265,818	18.2	△43,172	△14.0
재 난 관 리 기 금	96,671	7.7	118,554	8.1	21,883	22.6
재 해 구 호 기 금	48,039	3.8	61,413	4.2	13,374	27.8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88,764	7.1	81,912	5.6	△6,852	△7.7
농 어 촌 진 흥 기 금	3,159	0.3%	2,868	0.2%	△291	△9.2
식 품 진 흥 기 금	2,963	0.2	2,060	0.1	△903	△30.5
악 취 관 리 기 금	8,830	0.7	9,630	0.7	800	9.1

기 금 명	2022년	구성비	2023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2,997	0.2	2,304	0.2	△693	△23.1
에너지사업기금	10,389	0.8	14,258	1.0	3,869	37.2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57,045	4.6	55,985	3.8	△1,060	△1.9
사회복지기금	1,342	0.1	1,231	0.1	△111	△8.3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264	0.2	2,463	0.2	199	8.8
양성평등기금	793	0.1	728	0.0	△65	△8.2

※ () : 통합관리기금 제외 합계